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태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13
----------	------

발의년월일 : 2022. 09. 02.

발의의원 : 이태손, 박종필,
전태선, 류중우,
황순자, 하중환,
박소영, 김정옥,
이재화, 권기훈
의원(10명)

1. 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다.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안 제4조)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바. 재정 지원, 자료의 제공 요청 등(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사.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안 제9

조부터 제10조까지)

아.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 지원(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자. 전용주차장의 설치, 충전료 징수 및 감면(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차. 충전료심의위원회, 위임 및 운영위탁, 홍보, 포상(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5.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6. “세제 지원 등”이란 대구시가 부과하는 각종 지방세 부담과 대구시가 발행하는 공채 등의 매입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충전료”란 대구시가 소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
9. “공공건물”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기준과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대구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시 영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
3.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대구시가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사업
 - 가.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한 충전시설 설치·보급 사업
 - 나. 특허, 신기술인증, 성능인증, 관련 법령에 따른 임시허가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충전시설 설치·보급 사업
 - 다. 충전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사업
 - 라.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사업
3. 전기택시 충전기 전기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① 영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구청장·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같은 시설의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건축 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구시 지방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 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1조(충전시설의 수량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9조제1항1호의 시설 중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1기 이상
 2. 제9조제1항2호의 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3.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④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9조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라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였을 때에는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전용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충전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충전료를 감면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소유의 자동차

4.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예우대상자 소유의 자동차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충전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5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1.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충전료 감면에 관한 사항
-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담당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대구광역시의회가가 추천한 사람
- 2. 소비자단체의 대표
- 3.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 4.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위임 및 운영위탁)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7조에 관한 사업은 구·군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업무
2. 제14조에 따른 충전시설의 사용허가·충전료 징수 등 업무
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관내 공공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8. 삭제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車種)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

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

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제18조의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①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